

미술전공 실기강사 초빙 공고

2026학년도 부산예술고등학교 미술전공 실기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권자: 부산예술고등학교장

2.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한국화 1명

3. 채용 기간: 2026. 8. 18. ~ 2027. 2. 28. (방학제외)

4. 근무 조건

가. 근무시간: 수업 시간은 개인 일정에 따라 다르며 최대 주당 14시간 배정

나. 보수:

1) 정규수업(주간) 강사료: 시간당 30,000원

2) 방과후수업 강사료: 시간당 50,000원

다. 신분

1)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2) 「교육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함

3) 계약제교원에게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계약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4) 계약제교원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라.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5. 응모 자격

가. 응시 자격: 국내외 해당 전공 학사 이상 소지자

(전공 관련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부여)

나. 응모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전임교에서 4대비위 및 성관련 비위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된 자

5) 병역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7)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8) 채용 비리 관련자

6. 전형 방법

- 1차 서류심사 선발: 2026. 7. 23.(목) 17시 이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차 면접: 2026. 7. 24.(금) 13시~ , 부산예술고등학교 3층 미술교사실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7. 27.(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원서 접수

가. 기간: 2025. 7. 13.(월) ~ 2026. 7. 22.(수) 16:00 까지

나. 제출서류

- <붙임1> 응시원서 1부
- <붙임2> 실적확인서 1부
- <붙임3> 자기소개서 1부
- <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기재된 모든 학력의 재학, 수료, 졸업증명서 1부
- (선택) 교원자격증 사본 1부

8.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방법: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E-Mail), 방문접수 중 택1

접수방법	접수처	유의사항	비고
방문접수 등기우편	(46252)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20 (부산예술고 등학교 행정실)	□ 2026.7.22.(수) 16:00까지 도착분만 유효	방문접수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택1하여 제출 (중복 제출 불가)
전자우편	pusanarts@pusanarts.hs.kr	[컬러 스캔으로 모든 제출 서류를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제출(파일 형식: PDF) [파일명: (교과명) 이름 (예) (미술) 홍길동 □ 2026.7.22.(수)16:00까지 접수 확인분만 유효	

나. 접수결과 확인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 반드시 기재/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의 제출 시간 엄수/ 접수 결과 확인은 근무기준일 16:00 전에
유선 확인 ☎ (051) 514-1230

9.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5>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 사항

-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바.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이 있으므로 응시원서 자격증 항목에 기입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 채용 후 성범죄, 아동학대, 법정감염병, 마약류 중독 검사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예술고등학교 미술교사실로 문의 바랍니다.(T.515-8091)

2026년 7월 13일

부산예술고등학교장

응시원서

※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합니다. **필수정보(*)**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선택정보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정보 내용 미작성시 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증명사진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서양화	디자인	한국화	조 소 드로잉
		*주 소				
		*휴 대 폰		*E-Mail		

학 력 사 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구 분
				재학/ 수료/ 졸업
				재학/ 수료/ 졸업
				재학/ 수료/ 졸업
				재학/ 수료/ 졸업

경 력	직장/ 학교/ 학원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관 련 자 격 증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으며 마약류 중독과 관련된 문제가 없습니다.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부산예술고등학교 강사 모집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_____ (서명, 인)

실적확인서

지원자 선생님의 창작 작품물, 입시연구 이미지를 아래 란에 제시해 주십시오. (매수 무제한)
선생님의 작품이어야 하며 학생을 지도한 학생 작품을 제시하면 안됩니다.

<붙임3>

자기소개서

지원자 선생님의 역량과 미술교육 전문성을 경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고
부산예고가 지향해야 할 미술교육의 제시 내용을 1매 이내로 작성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부산예술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여부를 표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부산예술고등학교의 교강사 채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방법

- 수집항목: 사진,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항목: 제출 서류
- 보유 및 이용기간: 자료보존 법정 기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시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 . . .

성명 : (서명)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온라인접수는 해당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경우 기재) 다른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frac{1}{2}$ $\frac{1}{4}$ $\frac{1}{8}$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